■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Sodium hydrox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310-73-2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 보안경, 내산성보호의, 고무장갑(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재질, 스틸렌/부타디엔코팅 섬유), 고무앞치마, 양압자급 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가해야 함(절대로 물을 수산화나트륨에 가하면 안 됨). - 작업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 금연할 것. - 취급 후,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 -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보관・저장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습기가 용기내로 들어가면 안됨.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 및 수송금지.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할 것.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철, 구리, 주석,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alloy)로 제조된 저장용기는 사용하면 안됨(부식위험성). - 산, 유기물(모직, 가죽 등), 금속, 니트로메탄(nitromethane), chlorinated solvent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 - 과염소산염(perchlorates), 과산화물(peroxides), 과망간산염(permanganates), 염소산염(chlorates), 질산염(nitrates), 염소, 브롬, 플루오르 등의 산화제와 혼화위험성(incompatible)이 있음.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겨울철에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상태로 보관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